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9,850,385	20,995,512
일반회계	623,002,383	18,690,071
특별회계	76,848,002	2,305,440
공기업특별회계	50,680,861	1,520,426
상수도사업	19,819,325	594,580
하수도사업	30,861,536	925,846
기타특별회계	26,167,141	785,014
의료급여기금	1,970,314	59,10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311,706	39,351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34,063	7,02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272,697	38,181
수질개선관리	4,300,799	129,024
농공지구조성	3,575,000	107,250
중소기업육성자금	5,765,000	172,950
농업발전기금	7,737,562	232,12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005,362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